

정책연구보고 P37 / 2000. 4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서 종 혁	부 원 장
김 정 호	연 구 위 원
허 덕	부연구위원
김 경 덕	부연구위원
정 정 길	부연구위원
정 민 국	책임연구원
임 정 빈	책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2000년 3월 중순 파주에서 발생한 젓소 괴질이 구제역으로 판명되면서 우리 나라는 반세기 남짓만에 다시 구제역 발생지역이 되었다. 얼마 전까지 IMF 위기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꾸던 축산농민들의 시름은 말할 것도 없고, 축산업계뿐만 아니라 나라경제의 파급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는 1997년 타이완에서 발생한 구제역 경험을 교훈 삼아 발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검사를 강화하고 예방백신도 준비하는 등 방역체계를 갖추어 초동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범국가적으로 「의사구제역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4월 중순까지 발병한 6개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가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과 함께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축산농민들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축사 시설을 청결히 관리하고 가축 위생에도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협력도 중요한 때이다. 수포성 질병균은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공인된 만큼 불안해 하지 말고 축산물을 좀 더 소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이 4월 초부터 3주간 운영한 「구제역 대책반」의 연구 결과로서,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파급 영향 및 정책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조사에서 도움말을 주신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가 관련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2000.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빈 면

목 차

I.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현황	1
1. 구제역의 특징	1
2. 국내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조치 상황	4
3. 그간 나타난 문제점	11
II. 구제역의 영향과 피해액 계측	13
1. 피해의 범위와 계측방법	13
2. 피해액 계측 결과	14
<참고> 정부 지출비용 추정	17
<참고>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교역 현황	19
III. 구제역 관련대책 검토	21
1. 단기대책	21
2. 중장기 대책	26
부록 1 : 국내 구제역 발생일지	29
부록 2 : 대만의 구제역 경험과 시사점	46
부록 3 : 일본의 구제역 발생 상황	56
부록 4 : 구제역 관련용어	57

빈

면

I.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현황

1. 구제역의 특징

□ 전염속도가 빠른 법정전염병으로 우제류에 발생

- 구제역(口蹄疫,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우제류)에 전염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함.
- 구제역 증상은 소, 돼지 등 가축의 혀, 입 주위, 발굽 등에 물집이 형성되고 고열($40\sim 41^{\circ}\text{C}$)이 발생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임.
-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구제역은 발병율은 높으나 폐사율은 낮은 질병이며, 전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병이 되면 가축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킴.
- 어린 송아지의 경우 성우에 비하여 폐사율이 높으며 임신우에서는 유산을 초래하기도 함.
- 감염된 소들은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고 유방염, 산유량 격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힘. 특히 젖소는 착유량이 50% 정도 감소함.

□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은 소의 경우 2~14일이나, 매개체 조건에 따라 장시간(최대 200일) 생존 가능

- 구제역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작고 O, A, C, SAT-1, SAT-2, SAT-3, Asia-1 등 7개 타입(혈청형)이 있으며, O-1과 Asia-1이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발병함.

- 구제역 바이러스는 다양한 감염경로로 전파되어 발병함.
 - 감염동물과 접촉, 감염동물의 생산물과 분비물, 토양, 공기, 물, 건초 등 축산 조사료 등을 통하여 감염 가능
- 구제역 바이러스는 비활성 물질에서 장시간 생존이 가능함.
 - 구제역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물에선 50일, 8~18℃의 목초지(방목장)에서는 74일이며,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토양, 건초, 밀짚, 옷감에서 26~200일간, 혈액 등에 의해 오염이 전이된 금속이나 나무에서 35일간 생존 가능함.
 - 냉장육 상태로는 1~3일, 냉동육 상태에서는 55~90일간 생존함.
- 구제역 바이러스는 온도가 낮아질수록 생존기간이 증가하지만, 고온에 약하여 56℃에서 30분, 76℃에서 7초만에 사멸됨.

□ 구제역은 치료가 난이하여 백신으로 예방하는 수준

- 구제역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진단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World Reference Laboratory)로 수포액, 수포상피세포 및 혈청 등의 가검물 또는 감염동물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를 송부하여 확진하게 됨.
- 구제역 바이러스는 변형이 매우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 수준임.
 -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병원체를 불활화(不活化)시켜 만든 사독(死毒) 예방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인정을 받은 수입완제품을 사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 예방약을 만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방약을 만들면 오히려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약을 만들지 않고 있음.

- 구제역 백신은 세계적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제조하고 있음.
- 구제역 백신은 1차 접종시 항체율이 80~90%에 달하고 4주 후의 2차 접종시 100% 효과가 있음.(수의과학검역원 자료)
- 국제간 교류가 빈번한 요즈음 국가 간에 상당히 경계하는 전염병임.
 - 구제역 바이러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바이러스 종류를 판단하고 있고, 의사구제역 발병시 즉각적인 보고를 통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인체에는 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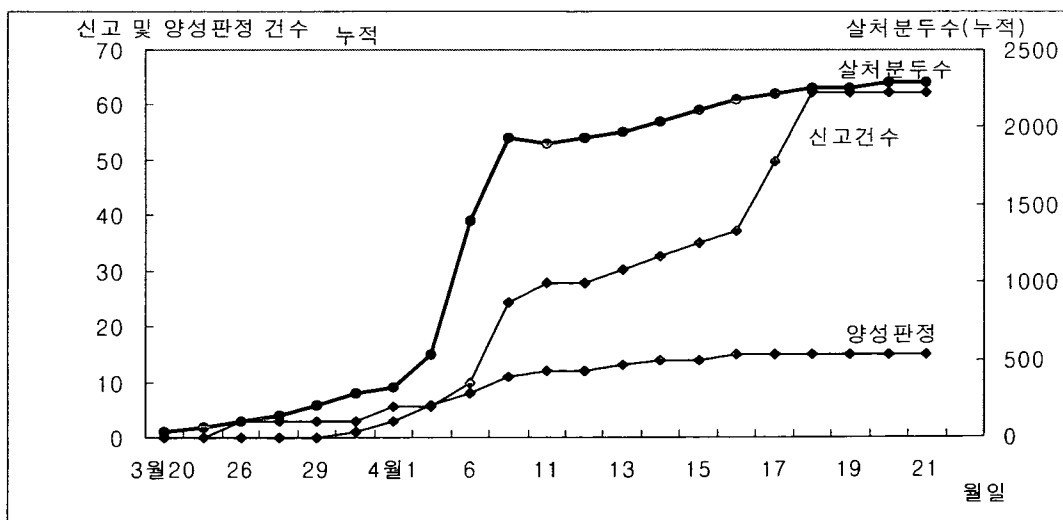
- 구제역 바이러스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역 발병 축산물인 인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구제역 연구의 세계적 권위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Pirbright) 연구소에서도 구제역을 인수공통 전염병에서 제외함.
- 따라서 감염된 고기를 사람이 먹더라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음.

2. 국내 구제역의 발생 경위와 조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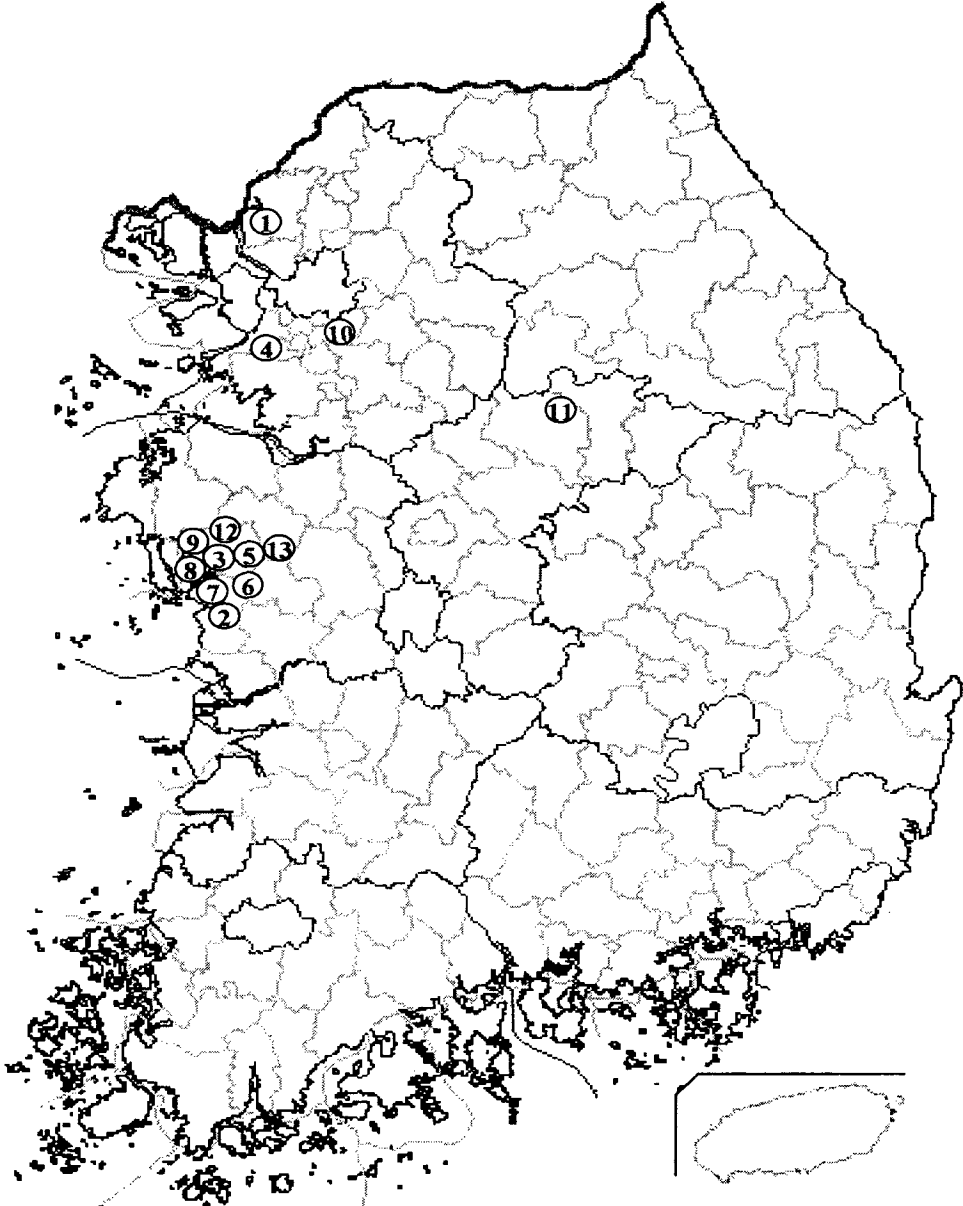
2.1. 발생 경위

- 2000.3.24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낙농가가 수포성 괴질을 보인 젖소를 파주시에 의사광견병으로 신고 → 3.25 수의과학검역원 보고, 시료검사 실시 → 3.27 농림부에서 의사 구제역으로 공식 발표 → 3.29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시료 송부 → 4.2 의사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수과원)
- 농가 수준에서의 발병은 3월 19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한우농가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며, 이 농가는 자가 치료를 계속하다가 3월 31일에야 신고함으로써 초동대응이 늦어진 결과를 초래함.
- 4월 17일 현재 구제역 발생 신고건수는 총 62건이며, 이중 양성판정이 15건, 음성판정이 45건, 검사 중에 있는 것이 2건임.
- 4월 2일 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이 구제역으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지역적으로는 충남 홍성지역에 구제역 양성판정 건수가 집중되어 있음.

<일자별 구제역 발생 건수 및 살처분 현황>



<4월 22일 기준 구제역 발생지역의 분포(양성판정 기준)>



- ① 경기파주(3월26일), ② 충남보령(3월28일), ③ 충남홍성(3월29일), ④ 경기화성(3월30일), ⑤ 충남홍성(3월30일), ⑥⑦ 충남홍성(4월1일), ⑧⑨ 충남홍성(4월7일), ⑩ 경기용인(4월10일), ⑪ 충북충주(4월11일), ⑫⑬ 충남 홍성(4월14일, 4월16일)

2.2. 조치 상황(4월 22일 현재 기준)

- 구제역이 발생한 6개 시·군에서 발생지역(500m 이내) 내의 가축 살처분 두수는 2,223두(181농가)임.
 - 지역별로는 경기 파주 파평면 106두(7농가), 경기 화성 비봉면 30두(1농가), 경기 용인 남사면 81두(2농가), 충남 보령 주산면 55두(1농가), 충남 홍성 1,820두(154농가), 충북 충주 신니면 131두(16농가)임
- 구제역이 발생한 6개 시·군에서 보호지역 내(10km 이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은 10,916농가 615,865두임.
 - 지역별로는 파주 97,539두(696농가), 화성 82,802두(1,142농가), 홍성 298,253두(4,532농가), 보령 19,692두(2,103농가), 용인 60,344두(699농가), 충주 57,235두(1,744농가)임.
- 구제역이 발생한 6개 시·군에서 가축이동제한 조치지역으로 지정된 보호지역과 경계지역(20km 이내) 내의 우제류에 대한 정부수매실적은 4월 20일 현재 소 1,288두, 돼지 49,219두임.
 - 지역별로는 파주가 소 61두, 돼지 13,712두, 홍성이 돼지 14,474두, 화성이 소 512두, 돼지 8,231두, 보령 돼지 5,244두, 용인 소 255두, 돼지 4,885두, 충주 소 453두, 돼지 2,673두임.
- 구제역이 발생한 6개 시·군에서 수매 대상이 되는 소·돼지 두수는 187만두 정도이며, 이는 전국 소·돼지 사육두수의 17% 정도를 차지함.
 - 축종별로는 한육우 193,743두로 전체사육두수의 10%, 젃소는 132,815두로 25%, 돼지 1,548,450두로 19% 정도임.
 - 구제역의 발생 두수가 가장 많은 충남 홍성은 6개 시·군 전체 수매대상 소와 돼지의 31.8%를 차지하며, 돼지는 전체 수매대상의 33.5%를 차지함.

<구제역 이동제한지역의 가축사육두수(1999년말 기준)>

단위 : 두

		한육우	젖소	돼지	계
홍 성	3km 이내	-	-	-	-
	3-10km	-	-	-	-
	10-20km	-	-	-	-
	계	64,550	14,673	518,241	597,464
보 령	3km 이내	1,364	54	1,151	2,569
	3-10km	5,832	1,393	11,205	18,430
	10-20km	11,508	1,589	24,920	38,017
	계	18,704	3,036	37,276	59,016
파 주	3km 이내	254	1,606	10,891	12,751
	3-10km	3,566	8,452	65,135	77,153
	10-20km	12,548	26,492	222,842	261,882
	계	16,368	36,550	298,868	351,786
용 인	3km 이내	1,463	106	4,661	6,230
	3-10km	10,175	4,332	37,381	51,888
	10-20km	29,515	21,987	288,293	339,795
	계	41,151	26,425	330,335	397,911
화 성	3km 이내	213	3,190	1,053	4,456
	3-10km	5,964	13,933	50,232	70,129
	10-20km	18,158	30,230	162,514	210,902
	계	24,122	44,163	212,746	281,031
충 주	500m 이내	112	0	0	112
	500m-10km	9,717	1,896	63,496	75,109
	10-20km	19,019	6,072	87,488	112,579
	계	28,848	7,968	150,984	187,800
계	계	193,743	132,815	1,548,450	1,875,008

주: 1999년 12월말 기준, 농림부 가축위생과 자료에서 재작성

<구제역 이동제한지역의 방역조치 내용>

구 분	발생지역 (살처분지역)	보 호 지 역		경계지역 (10~20km)	비 고
		3km이내	3~10km		
1. 가 축	전두수 살처분, 신규입식 제한	이동금지	좌 동	좌 동	지정도축장 출하시 조건부 이동 허용
2. 원 유	소독후 폐기 또는 매몰	소독후 폐기	고온멸균 처리후 유통	좌 동	
3. 가축분뇨	농장반출금지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동	좌 동	제한지역내 공동처리시설로 운송 허용
4. 사 료 (건초포함)	소독·소각 또는 매몰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동	수송차량 소독 후 반출허용	
5. 음 식 물 쓰 레 기	소독·소각 또는 매몰	제한지역밖 반출금지	좌 동	좌 동	
6. 지 육 부 산 물	-	지정도축장에서 소독 폐기	좌 동	좌 동	제한지역밖 랜더링 처리시설 처리허용
7. 예방접종	-	우제류동물 전두수 접종	좌 동	미접종	
8. 혈청검사	살처분전 일부 실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실시	미실시	경계지역 예찰강화
9. 인공수정	-	금 지	금 지	인공수정 행위 자제	
10. 가축시장	폐쇄	좌 동	좌 동	잠정적 폐쇄	
11. 사 람	거주자의 출입 금지	소독실시	좌 동	농장 등 방문 자제 당부	
12. 차 량 · 가축수송	통행금지	통행제한	좌 동	좌 동	지정도축장 출하목적에 한하여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집유수송	통행금지	통행금지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소독후 통행허용	
· 사료수송	통행금지	제한지역밖 통행금지	좌 동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 식육운반	통행제한	좌 동	좌 동	좌 동	운반목적과 적재물을 확인후 조건부 통행허용
· 부산물 운반	통행금지	통행제한	좌 동	좌 동	운반목적과 적재물을 확인후 조건부 통행허용
· 기타 차량	통행제한,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소독후 통행허용	좌 동	좌 동	레저목적의 차량은 통행금지

자료: 농림부 구제역 실무대책위원회

<우제류 수매단가(2000.4.10)>

축 종		가 격	수 매 가 격	비 고
한 우 (원/kg)	암	5,325		
	수	4,887		
육 우 (원/kg)		3,198		
돼 지 (원/kg)		1,606	110kg 이상은 10%가산	
젖 소 (천원/두)	초산우	2,021		
	다산우	1,105		
	노산우	707		
사슴 (3세이상 성록 천원/두)	꽃사슴	암	700	
		수	1,250	
	레드디어	암	900	
		수	1,750	
	엘크	암	3,250	
		수	8,500	
산 양 (원/kg)		8,000		

※수매대상

- 한(육)우 : 500kg 이상 큰 소를 수매하되 600kg 이상 수소부터 우선
단, 암소는 400kg 이상 수매
- 젖소 : 저능력 착유우(초산우, 다산우, 노산우)
- 돼지 : 비육돈 생체중 100kg 이상 규격돈
자돈은 두당 6만원에 수매하여 시·군 공무원이 확인 매물
모돈은 지육 kg당 1,638원

<구제역 대책비 지원내역(2000.4.19)>

단위 : 억원

	계	축산발전기금	국고(예비비 · 농특회계)
합 계	4,767	4,379	388
☐ 긴급 방역·소독	616	376	240
○ 예방약	237	194	43
○ 예방접종시술 및 기자재	165	161	4
○ 소독약·생식회	207	14	193
○ 예방접종 표식	7	7	-
☐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금	148	-	148
○ 가축살처분 보상금	41	-	41
○ 사료 등 오염물 폐기보상	10	-	10
○ 뼈 등 가축부산물 폐기보상	97	-	97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수 매·수출용 돼지수매	3,079	3,079	-
☐ 이동제한지역 농가 경영안정 자금	924	924	-

자료 : 농림부 축산정책과.

3. 그간 나타난 문제점

□ 구제역 발생초기 축산업계의 이해 부족

- 국내에서 잊혀졌던 구제역이 60여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유사한 수포성 질병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함.
 - 홍성지역의 경우 초기에 양축농가 및 수의사가 구제역 발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결과, 일반 질병과 같이 자가 처리함으로써 신고와 초동방역이 지연됨.
- 구제역 발생 초기에 의심축에 대해서는 신속히 신고하여 추가적인 발병이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하지만, 발병 신고는 가축의 이동제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농민이 비협조적이었음.
-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가축은 전부 살처분한다는 오해로 인해 양축농가들이 백신 투여를 기피함.

□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대책집행 지연

- 지방자치단체와 양축농가 등이 구제역 대책 집행에 있어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수단이 제도적으로 미흡
 - 특수차량을 통한 수송 및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하였으나 자기 지역 가축의 전염을 우려하여 타지역 가축 반입 및 통과 반대
 - 도축된 지육의 가공을 위한 가공공장 반입을 거부
 - 도살 처분한 가축의 매몰 장소를 마련하는데도 어려움 가중
- 도지사의 자치단체장과 농가에 대한 설득 노력, 언론의 비난 등에도 불구하고 군간 또는 도간 지역이기주의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홍수 출하와 소비 위축으로 가격 하락

- 양축농가의 불안심리로 인한 일시적인 조기출하 사태 발생
 - 축산농민들은 이동제한에 포함될 것을 우려하여 조기 출하하였고, 여

기에 더하여 양돈의 경우는 수출업자의 재고물량까지 겹쳐 돈가하락을 유발함.

-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소비자의 육류에 대한 소비 위축(약 25% 내외)
 - 구제역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육류 소비 감소
- 농가출하가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유통구조 불합리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변화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질병에 대한 위기관리체계 미흡

- 가축전염병예방방법상 방역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태에 대응하여야 하지만, 준비부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늦어짐.
 -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도·시군) 협조체계 미흡으로 초동방역이 늦어지는 사태도 발생

□ 정부 수매조치에 대한 일부 농민의 불만 노출

- 구제역 발생 초기에 도축시설 부족 등으로 이동제한지역내 가축에 대한 정부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
 - 여기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인근 도축시설의 이용 제한도 큰 요인으로 작용
- 수매단가를 시가 기준(수매일이 속한 직전주 1주일의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수매가격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됨.
 - 특히 젓소의 경우 우유 생산능력이 수매가격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II. 구제역의 영향과 피해액 계측

1. 피해의 범위와 계측방법

- 구제역 발생이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축종별 생산량과 가격조건 등을 2000년 연평균 지표와 비교하였으며, 추정 방법은 「KREI-ASMO 99」 모형에 의함.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는 구제역 발생지역내 가축의 살처분에 따른 1차적 손실, 그리고 축산물 시장여건의 변화(가격하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농가판매액 감소로 인한 2차적 피해로 구분됨.
 - 1차 피해 : 2000.4.20 현재 6개 시·군의 구제역 발생지역 내에서 살처분된 가축두수(돼지: 74두, 한육우: 1,832두, 젖소: 163두)
 - 2차 피해 : 축산물 수출중단으로 수출물량이 국내에 반입됨으로써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분, 그리고 국내 축산물 수요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하락분을 포함한 피해를 계측
 - ※구제역 발생 직후 돼지고기와 쇠고기 국내수요는 20~30% 감소, 가격은 약 22% 하락하였기 때문에 2000년 연평균 돼지고기 수요는 약 25%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함.
- 관련산업의 피해는 생산관련 산업인 사료업체, 축산기자재 업체, 동물약품업체 등에 대한 후방산업에 대한 피해와 도축장, 유가공업체, 도소매업 등에 대한 전방산업에 대한 피해로 구분할 수 있음.
 - 사료업체 : 사육량 감소에 따른 사료수요 감소
 - 축산기자재업체 : 축산기자재 산업 및 동물약품업체의 수요 감소
 - 축산물 유통업체 : 국내 축산업 유통 및 도·소매업 피해 등 고려
 - 육류 수출업체 :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

2. 피해액 계측 결과

2.1. 총괄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생산 및 관련산업의 피해액은 2000년에 총 2조 4,156억원으로 추정됨
 - 축산생산 피해는 1조 3,493(1차 피해: 37.7억원, 2차 피해: 1조 3,455억원)
 - 관련산업 피해액은 1조 663억원

<피해액 총괄표: 2000년>

단위: 억원

피해유형 \ 축종별	양돈산업	한우산업	낙농산업	계
축산생산 피해	7,431	6,050	11.3	13,493
- 1차 피해(살처분)	1.1	34.8	1.8	37.7
- 2차 피해(가격 하락)	7,430	6,015	9.5	13,455
관련산업 피해	4,485	6,164	14.3	10,663
- 사료업체	-	119	14	133
- 약품 및 축산기자재	-	4	-	4
- 가공, 유통 및 도소매	4,485	6,041	0.3	10,526
합 계	11,916	12,214	25.6	24,156

주: 1차 피해(살처분)는 정부가 보상하므로 엄밀히 말해 사회적 비용임.

2.2. 돼지

□ 양돈생산 피해액: 7,431억원

- 구제역으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가 전체적으로 25% 감소하며, 그 중 80%는 국내산, 20%는 수입육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양돈생산 피해액 7,431억원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국내 양돈생산액 전망치(2조 6,760억원)의 약 27.8% 수준임.

□ 관련산업 피해액: 4,485억원

- 살처분된 돼지 두수가 미미하여 국내 사료산업,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산업 등의 피해는 극히 적으므로 추정에서 제외
- 국내 양돈 가공, 유통 및 도·소매업체 피해: 4,485억원
 - 판매액(소비자가격 기준) 변화량에 유통마진 30.2%를 적용하여 계산

□ 양돈 산업의 직간접 피해액 합계: 11,916억원

- 양돈생산 피해액 + 양돈관련산업 피해액
- 2000년 양돈생산액 전망치(2조 6,760억원)의 약 44.5%에 달함.

※ 돈육수출 중단에 따른 외화획득 감소: 2조 8,760억원(5년 누계)

- 2000년: 5,470억원, 2001년: 5,330억원, 2002년: 5,190억원,
2003년: 5,820억원, 2004년: 6,950억원

2.3. 한육우

□ 한육우생산 피해: 6,050억원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국내 한육우 생산액 전망치 (1조 9,400억원)의 약 31.2% 수준임.

□ 관련산업 피해: 6,164억원

- 사료업체: 119억원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한육우 사육두수는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
 - 사료업체의 부가가치 중에서 한육우가 점하는 비중 25.2%(2,370억원)를 고려하여 사육두수 감소 비중만큼 사료수요가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료업체의 피해액은 약 11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동물약품: 4억원
 - 동물약품 부가가치(1,091억원)에서 한육우산업이 점하는 비중(7.2%)을 고려하여 사육두수의 감소분을 계산
- 국내한육우 가공, 유통, 및 도·소매업체 피해액: 6,041억원
 - 판매금액(소비자가격) 변화량에 마진률 39.0%를 적용

□ 한육우 산업의 직간접 피해액 합계: 12,214억원

- 2000년 한육우 생산액 전망치(1조 9,400억원)의 약 63.0%에 달함.

2.4. 젓소

□ 낙농생산 피해: 11.3억원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00년도 낙농생산액 전망치(1조 3,260억원)의 약 0.1% 수준임.

□ 관련산업 피해: 14.3억원

- 사료업계: 14억원
 - 구제역으로 인해 낙농가의 젓소 사육두수가 약 0.3% 감소함으로써 연 평균 사료비 총액(4,540억원)의 0.3%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낙농품의 가공, 유통, 및 도·소매업체 피해액: 0.3억원
 - 판매액(소비자가격 기준) 변화량에 마진률 37.0%를 적용

□ 낙농산업의 직간접 피해액 합계: 25.6억원

- 2000년 낙농생산액 전망치(1조 3,260억원)의 약 0.2% 수준임.

<참고> 정부 지출비용 추정

<정부 지출비용 총괄표>

단위: 억원

비목 구분	금 액	비 고
1. 살처분 보상	41	정부지원액 기준 "
2. 오염물 폐기 보상	107	
3. 방역 및 소독 비용	616	
4. 융자금 이자	46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분
5. 수매육류 보관비용	911	보호·경계지역의 가축 전부 수매
	(456)	(보호·경계지역 가축 50% 수매)
합 계	1,721 (1,255)	

<계산 근거>

1. 살처분 보상 : 40.9억원

1) 한육우 : 34.8억원

- $(1,832\text{두} \times 5,106\text{원/kg} \times 550\text{kg} \times \text{성우비율 } 58\%) + (1,832\text{두} \times 3,198\text{원/kg} \times 200\text{kg} \times \text{송아지 및 육성우 비율 } 42\%) = 34.8\text{억원}$

2) 젖소 : 1.8억원

- $(163\text{두} \times 2,021\text{천원/두} \times \text{초산우 비율 } 14.2\%) + (163\text{두} \times 1,105\text{천원} \times \text{다산우 비율 } 55\%) + (163\text{두} \times 707\text{천원} \times \text{기타비율 } 30.7\%) = 1.8\text{억원}$

3) 돼지 : 1.1억원

- $(74\text{두} \times 1,606\text{천원} \times \text{성돈비율 } 91.6\%) + (74\text{두} \times 16.06\text{천원/kg} \times \text{평균체중 } 50\text{kg} \times \text{자돈 및 육성돈 비율 } 8.1\%) = 1.1\text{억원}$

4) 산양 : 0.9억원

- $8,000\text{원} \times 80\text{kg} \times 645\text{두} = 0.9\text{억원}$

5) 사슴 : 0.2억원

○ $2,725\text{천원} \times 9\text{두} \times \text{성육비율 } 80\%^{1)} + 700\text{천원} \times 9\text{두} \times 20\% = 0.2\text{억원}$

6) 우유 폐기로 인한 보상액 : 2.1억원

○ $163\text{두} \times \text{착유우 비율 } 69.3\%^{2)} \times \text{연간산유량 } 6,099.1 \text{ kg} \times 1/2(6\text{개월}) \times \text{평균 유대 } 600\text{원}^{3)} = 2.1\text{억원}$

2. 사료, 뼈, 가축부산물 등 오염물 폐기보상 : 107억원(정부지원액)

3. 방역 및 소독 비용 : 616억원(정부지원액)

- 예방약 237억원
- 예방 접종 시술 및 기자재 165억원
- 소독약·생석회 207억원
- 예방접종 표식 7억원

4. 융자금 이자 : 46.2억원

○ 경영안정자금지원액 924억원 $\times$ (시중이자율 11% - 정책금리 5%) = 46.2억원

5. 수매육류 보관비용⁴⁾ : 911억원(보호 및 경계지역내 소 및 돼지 전량 수매 시)

1) 수출용 돼지고기 적체분 : 6.7억원

○ $3,335\text{톤} \times 6\text{개월} \times 1.1\text{원/일/kg} = 6.7\text{억원}$

2) 보호 및 경계지역 가축 수매분 : 316.6억원

- 돼지 : $1,548,450\text{두} \times \text{평균체중 } 103.8\text{kg} \times \text{발생지역 제외 비중 } 15/16 \times \text{정육율 } 56\% \times 1.1\text{원} \times 6\text{개월} = 169.4\text{억원}$
- 한육우 : $193,743\text{두} \times \text{평균체중 } 559\text{kg} \times 15/16 \times \text{정육율 } 40.2\% \times 1.1\text{원} \times 6\text{개월} = 81.9\text{억원}$
- 젓소 : $132,815\text{두} \times \text{평균체중 } 650 \text{ kg} \times 15/16 \times \text{정육율 } 40.2\% \times 1.1\text{원} \times 6\text{개월} = 65.3\text{억원}$

1) 사슴의 경제수명 5년으로 가정

2) 199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 자료

3) 1998년 평균 유대 576원/kg(축산물 생산비 조사자료)

4) 보관료는 정육 1kg당 1일 1.1원(부가세 포함), 보관기간 6개월 가정

<참고>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교역 현황

□ 돼지고기

- 돼지고기 수출액은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 1,679.8백만 달러의 20.2%에 해당하는 339.9백만 달러임(1999년도 기준).
 - 돼지고기는 단일 품목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중 최대 수출 실적을 보여왔음.
 - 더욱이 돼지고기는 지난 1997년의 대만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기인하여 일본 등 주요 수출 경쟁시장에서 국산 돈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수출유망 품목이었음.
 - 구제역 발생 전의 상황에서 금년도 돼지고기 수출목표는 약 4억 4천만 달러였음.
- 국산 돼지고기의 주 수출시장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1999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국산 돼지고기 수출의 97.4%가 일본으로 집중되어 있음.
- 한편 돼지고기의 수입액은 1999년도 기준으로 226.6백만 달러이고 주 수입선은 전통적 돈육 수출국인 덴마크와 미국임.

□ 쇠고기

- 쇠고기 수출은 1999년 기준으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의 0.2%에 해당하는 3.6백만 달러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 1999년도의 쇠고기 수입은 505.4백만 달러로서 전체 농림산물 수입액 7387.7백만 달러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 나라 쇠고기의 주 수입선은 미국과 호주임.

<돼지고기와 쇠고기 교역 현황>

단위: 천톤, 백만불

구 분	1999		2000. 2월		2000. 목표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수 출	105.9	349.1	14.9	59.7	-	-
(돼지고기)	102.4	339.9	14.4	38.3	131.0	435.0
· 일 본	84.5	330.9	11.5	57.0	-	-
· 필리핀	8.6	3.8	2.0	0.9	-	-
· 대 만	5.6	2.7	0.7	0.3	-	-
(쇠고기)	0.7	3.6	0.08	0.6	-	-
· 일 본	0.6	3.5	0.08	0.6	-	-
· 미 국	0.02	0.08	-	-	-	-
수 입	335.8	738.9	59.6	144.2	-	-
(쇠고기)	197.6	505.4	33.2	99.9	-	-
· 미 국	96.8	307.5	18.6	68.5	-	-
· 호 주	80.5	145.3	10.0	19.1	-	-
(돼지고기)	131.8	226.6	25.2	43.0	-	-
· 덴마크	38.5	67.8	7.5	14.0	-	-
· 미 국	22.2	30.8	2.5	3.8	-	-

자료: 농림부 무역진흥과

Ⅲ. 구제역 관련대책 검토

1. 단기대책

< 기 본 방 향 >

- 구제역의 조기 박멸을 통한 발생지역 확산을 차단

□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철저

- 농가의 방역시스템 구축
 - 양돈농가는 농장 입구에서부터 방역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육우 및 젖소농가는 아직까지는 방역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음.
 - 한육우의 경우 주로 가축시장을 통하여 거래됨으로써 구제역의 확산 용이
 - 한육우 및 젖소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위기 의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방역 조직 구성·운영
 - 지역단위 가축질병 공동방역단의 기능 활성화
 - 시·군, 지역축협, 공수의사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단위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필요경비의 국고 보조 확대
 - 지역내 일반수의사 및 축종별 생산자조직과 공조할 수 있는 방역체계 구축
 - 소독약 및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원활한 배급체계 구축
- ※ 대만의 경우 1997. 3월 초동방역에 실패하여 급속히 확산되었고 사후관리 미흡으로 동년 12월 이후 구제역이 재발함.

□ 위기관리 개념의 방역체계 구축과 운용

- 국가 위기관리 개념에서의 구제역 방역 추진
 -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가 큰 홍성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
 -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지방정부의 위기관리 대처실적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비의 차별적 지급
- 구제역 발생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백신 예방접종 대상지역의 확대를 통해 전국적 확산 차단
- 가축 전염병 발생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전염병과의 전쟁이라는 개념에서 단계적인 위기관리체계 구축
 - 위험 수위에 따른 대처방안 매뉴얼화

□ 구제역 발생 원인의 규명

- 발생 원인에 따라 구제역 박멸대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원인 규명 필요
 - 현재 구제역의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1) 황사에 의한 바람전파, 2) 수입 뱃쥐에 의한 전파, 3) 해외로부터 축산물 반입에 의한 전파, 4) 구제역 지역을 방문한 사람 등에 의한 전파, 5) 축산물 밀수에 의한 전파, 6) 항공기 및 선박(잔반 포함) 등에 의한 전파 7) 북한지역으로부터의 가축이동에 의한 전파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음.
 - 구제역 박멸의 조기 종결과 앞으로 국내 축산업 발전방향 설정은 구제역 발생 원인과도 직결됨.

□ 살처분 가축 소각시설의 설치 및 확충

- 구제역 가축의 살처분시 환경오염(하천,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각 시설이 바람직하나, 지역이기주의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구제역 발생지역 인근과 가축 집단사육지역에 소각장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살처분 및 이동제한지역내 양축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시장가격과 연동되는 시가 방식이 원가보상보다 농가에게 유리하다는 사실 홍보
- 적절한 살처분 보상과 생업대책 강구
 - 젓소의 경우 산유능력을 반영하는 보상단가 재검토
 - 살처분 및 이동제한지역내 양축농가에 대한 생업대책 강구
 - 단기적으로 사육 중단에 따른 생계비 지원(실업급여 수준의 지원 고려)
 - 보호지역내 백신의 예방접종을 통한 계속 사육
 - 청정지역으로 사육농가의 분산 유도를 위한 이주비용 등 지원
- 긴급경영자금 저리 융자지원
 - 이동제한지역에서 정상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지원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대대적인 소비촉진과 가격안정대책 강구

- 육류에 대한 학교 급식과 군 급식을 확대하여 내수 촉진
 - 어린이들이 잘 먹는 돈까스 등을 개발하여 소비 촉진
- 소년소녀 가장 및 무료급식소에 국내산 육류의 무료 급식
- 수출중단으로 공급 과잉 상태인 돼지고기를 남북농업 협력차원에서 북한에 제공
 - 양돈 생산자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 범농업계가 중심이 되어 육류소비 촉진운동 전개
- 정육점 등 소매단계 업체에 대한 가격 연동 독려
 - 산지가격과 연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 사찰 등 강력 대응조치 강구

※동아일보와 리서치&리서치사의 소비자조사(2000.4.14)에 의하면 구제역 파문 종결시까지 육류를 먹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2.8%로 나타남.

□ 가축공제사업에 주요 전염병 공제를 추가한 상품 개발

-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수 법정전염병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공제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
 - 현재 가축공제사업의 대상 질병에 중요 전염병을 추가한 공제상품을 개발 가입하게 함으로써 당장의 이익 때문에 감염사실을 은폐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줄임.
 - 현행 살처분 법정 보상금은 시가의 80% 수준, 나머지 20%에 대해서 가축공제사업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축공제사업 보완
 - 전염병 관련 상품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기관에 재보험을 들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가축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공제기금 조성 적극 검토

□ 해외의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 축산물 수입검역 강화
- 항공기, 외국 선박 등을 통하여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의 축소
 - 남은 음식물 등도 검사,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 구제역 발생지역의 여행객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귀국시 철저한 검역 실시
 - 불법 휴대육류 검역 철저
- 구제역 발생국가의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벗짚 등 조사료 수입 제한

□ 검역 및 방역체계 강화

-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 계속적으로 서·남·동해안 및 휴전선 인접지역 등 구제역 잠입우려지역을 중점으로 하여 전국적인 혈청학적 모니터링 검사를 수시로 실시
 - 남북농업협력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구제역 방역기술 및 시스템 지원 적극 검토

- 구제역 지역 항공기, 선박 등의 입항시 검역체계 강화 및 지속적 단속
- 밀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
- 가축시장의 방역체계 강화
 - 환경이 열악한 재래 가축시장이 가축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 체계를 확립

□ 방역을 위한 철저한 훈련과 교육

- 구제역 등 해외악성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
- 구제역 등 악성 외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훈련(CPX) 실시 강화
 - 민방위 훈련과 같이 축종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방역훈련 실시
 - 악성 외래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기신고와 신속 정밀진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역대책 재점검
- 구제역 박멸 이후에도 악성 외래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가상한, 발병 초기 단계부터 중앙 및 일선 가축방역기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 강화 훈련 등 수시 실시
 -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등도 훈련에 참여
- 구제역을 비롯한 가축 전염성 질병 세미나, 기술훈련 및 교육의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 공항·항만 등에 중요 장소에 현수막 설치 및 포스터 부착, 교육·홍보용 전단 살포 등 활동을 강화
 - 대국민 접촉에 의한 구제역 피해 등을 홍보하여 가축 질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2. 중장기 대책

< 기 본 방 향 >

- 생산조정을 통하여 축산물 수급균형 유지
- 선진국형 축산업 구축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조기 실현

□ 조사료 기반의 확충과 자급을 제고

- 볏짚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조사료로부터 감염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 부존자원의 이용 차원, 가축의 생산성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조사료 생산 기반의 확충은 매우 중요함.
 - 친환경농업 직불제 차원에서의 조사료 생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검토
 - 볏짚 암모니아 처리, 농산부산물 이용 등 부존자원 이용 장려

□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

- 구제역 발생이전에도 축산업 내에서는 미약하나마 자조금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구제역 발생 이후 자발적인 차원의 자조금이 아닌 강제적 참여에 의한 자조금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양축농가, 사료업체, 가공업체 등이 공동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촉진 홍보비용 등에 충당할 필요가 있음.
 - 자조금 조성으로 축산물 소비에 대한 지속적 광고 실시

□ 돈육수출 중단에 따른 대책 강구

- 가격 안정을 위한 생산자 스스로의 수급조절 유도
 - 가격 하락에 의한 농가의 소득감소는 궁극적으로 생산자 스스로의 수

급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돈육수출업체의 내수산업 참여 유도

- 수출 중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육 수출업체에 시설투자 등을 감안한 금융상의 지원으로 내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출재개를 위한 외교활동 강화

- 구제역을 조속히 박멸하여 구제역 청정지역을 선언한 뒤, 중단된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수의검역 기능의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관리체계의 확립

○ 수의과학검역원을 수의청(가칭)으로 확대 개편을 검토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의조직을 수의청에서 총괄

※세계적인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는 수의식품청(Danish Veterinary & Food Administration)에서 수의 업무와 동물의 검역·방역·검사업무를 수행하며,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덴마크의 수의식품청은 1국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방역검역 기능, 축산식품 등 관련규정 재개정 기능, 축산식품 등의 검사 기능, 연구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선진국형 친환경 축산업으로 발전 유도

○ 양돈산업은 당분간 수출중단에 따른 내수산업으로 육성

○ 축산물의 안전성을 고려한 생산체계 구축 및 양축농가들의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의식 고취

○ 지역단위 가축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기준, 분뇨처리기준 등을 강화하여 친환경축산으로 유도

○ 가축밀집지역의 분산을 위한 지역 재배치 추진

-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 가축밀집지역 축산은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분산 사육할 수 있도록 이전 대책 강구

□ 국가간 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 해외협력 추진

-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방역체계 구축
 - 우리 나라만의 노력으로 청정지역 회복은 불가능하며 중국, 대만, 일본 등 인접국가의 가축 전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동대책 연구가 필요
- 황사 발생지에 방풍림 조성에 대한 지원 고려
 - 중국 고비사막 등의 황사 발생이 우리 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적 또는 기술·인력적 지원 고려
 - 기후협약 등 오염배출원 제제에 관련된 협약 등에 적극 참여

□ 가축질병 및 방역에 관한 연구 강화

- 가축 질병 및 전염병,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관련된 기초연구
 - 가축 전염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가축 질병 및 전염병 관련 통계의 구축,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위험도분석 체계 연구, 가축 질병의 경제적 피해분석, 가축검역 및 방역체계 개선 연구, 질병 전파 모델 개발 등
- 구제역 등 전염병에 대한 정밀 진단법 개발 등 현장적용 연구

부록 1 : 국내 구제역 발생일지

일자	발 생 상 황	조 치 사 항
3.19	충남 홍성 최창국씨 한우 8두 증상 보임	-
3.20-24	경기 파주 김영규씨 젖소 15두 의 사구제역 발생	-
3.24	충남 홍성 전학수씨 한우 20두 의 사구제역 발생	-
3.25	-	경기축산위생연구소 파주 의사구제역 임상검사→수과원에 발생보고→수과원 시료검사 실시
3.26	충남 홍성 이봉희씨 한우 5두 증상 보임	○수의과학검역원, 파주 발생농장 젖소 15두 의사구제역 판정 ○농림부 수포성질병 대책본부 설치
3.27	-	농림부 의사구제역 공식발표
3.28	충남보령 이종복씨 한우 16두 의사구제역 발생	○농림부 수포성질병 비상대책회의 개최(차관주재) ○ OIE에 의사구제역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통보
3.29	○충남 홍성 김인환씨 한우 5두 의 사구제역 발생 ○경기 화성 성운제씨 젖소 7두 의 사구제역 발생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에 파주지역 젖소 검사 시료 송부 ○수출규격돈 수매 발표
3.30	충남 홍성 이상재씨 한우 1두 의사구제역 발생	○미국 한국산 우제품 및 생산물 수입 잠정 보류 ○경제정책조정 장관회의 및 차관회의-부처별 협 조사항 논의
3.31	충남 홍성 최창국씨, 이봉희씨 수과원에 발생 신고	○호주 한국산 우제품 및 생산물 수입 잠정 보류 ○농림부, 파주 의사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가 지원대책 발표
4.1	충남 홍성 최창국·이봉희씨 농가 의사구제역 판정	충남도에 가축이동제한 및 발생지역 가축 도살, 매몰처리 구두로 조치
4.2	○충남 홍성 전학수 이상재씨, 경기 화성 비봉면 성운제씨 의사구제역 발생신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경기 파주 권수목장 의사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	○충남도에 대한 구두조치 상황 공문으로 지시, 통제 초소 설치 -시간여건상 이동제한사실을 모든 대상농가에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돼지 502두(8농가)가 서울 및 인천 도축장에 각각 출하 ○홍성 가축시장 잠정 폐쇄하고, 파주 경계지역내 큰 돼지 수매

일자	발 생 상 황	조 치 사 항
4.3	충남 홍성 구항면 김인환씨, 충남 보령 주산면 이종복씨 의사구제역 발생신고	○ 의사구제역 특별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발생지역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대책 추진 ○ 의심가축 신고단계부터 초동방역, 차단방역 지시
4.4	○ 충남 홍성군 전학수, 이상재씨 농장의 가축 의사구제역 판정 ○ 충남 홍성군 김인환씨 한우 5두 의사구제역 판정 ○ 충남 보령시 이종복씨 한우 16두 의사구제역 판정 ○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 파주 구제역 양성 판결 (구제역 O형)	○ 홍성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지정도축장 지정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수매지침 시달 ○ 메리알社 및 바이엘社와 구제역 예방약 300만두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 ○ 농림부, 시도농축협에 대하여 의사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지시 ○ 농림부 가축시장 폐쇄명령 발동요청 ○ 범정부 쇠고기·돼지고기 더 먹기 운동전개,
4.5	○ 의사 구제역 발생 3건 신고, 발생신고 12건 음성 판정	○ 전국 가축시장 폐쇄조치 ○ 홍성지역 이동제한 이전 출하돼지 전량 음성확인 및 정부수매조치 ○ 도축 부산물 폐기방법 및 보상기준 통보 ○ 홍성, 보성 차관주재 현장 대책회의
4.6	○ 충남 홍성, 당진 돼지구제역 신고 음성 판정	○ 경기 충남 수의사 총동원령 ○ 구제역 예방약 75만두분 국내 도착(1차), 구제역 예방약 500만두분 검역원에 추가구입 지시 ○ 농림부 구제역 대책상황실 확대 개편
4.7	○ 수의과학검역원 홍성 등 의사구제역 7건 모두 구제역으로 판정 -충남 홍성 5건, 경기 화성 1건, 충남 보령 1건	○ 이동제한지역의 지육반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우리 축산물 더먹기 캠페인 전개 ○ 구제역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예방접종, 혈청검사 등 실시
4.8	○ 경기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한우), 팔탄면 해창리(젓소), 정남면 고지리(한우),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2리(젓소 음성판정)	○ 수출용돼지 및 이동제한구역내 우제류 수매대행 기관 추가지정(기존 한냉 → 축협중앙회 추가) ○ 구제역 직접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재해에 준하는 간접지원기준 시달
4.9	○ 충남 홍성군 김갑환 한우 1두 양성 판정	○ 구제역발생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 지침시달 ○ 구제역 예방약 75만두분 국내 도착(2차)
4.10	○ 경기 용인 의사구제역 발생	○ 농림부차관 구제역현장 대책협의회 주재 ○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방안 시달 ○ 국제청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내역 통보 ○ 정부지원 구제역방역용 생식회 시도별 배정 통보 ○ 경찰청에 구제역 방역요원 추가 협조 요청
4.11	○ 충북 충주시 하구용 한우 5두 양성 판정	○ 이동제한지역내 수매정책(수정보완) 발표

일자	발 생 상 황	조 치 사 항
4.12	○양성 12건, 전일대비 변동없음	○충주지역 이동제한지역 우제류 수매 지시 ○구제역 예방접종 리후렛 10만부 제작 배부 ○구제역발생 가축살처분 현시가 보상방안시달 ○모든 수매시 부산물 가격 적용기준 통보
4.13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 재교 한우 1두 양성 판정	○홍성지역 구제역 대책회의 -검역원장,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부군수, 도축업체 대표등 참석 ○선기일 이동제한 지역내 초소근무 철저 지시 ○이동제한지역내 원활한 도축, 부산물 처리를 위한 협의조정
4.14	○양성 14건, 전일대비 1건증가	○구제역 역학 조사 활동 ○구제역 긴급 방역 조치 추진 철저 지시
4.15	○양성 14건, 전일대비 변동없음	○ 구제역 2단계 방역작전 돌입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기간 연장 - 구제역 방역업무로 인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업무차질 ○ 역학조사위원회, 충북 충주지역 역학조사
4.16	○양성 15건, 전일대비 1건증가 -충남 홍성군 구항면 공리 박광민(한우 1두)	○충주지역 구제역 대책 추진상황 점검 ○돼지고기 단체급식 확대 협조 요청 -돼지고기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등 수출중단으로 업계 경영난 심화 해소
4.17	○양성 15건, 전일대비 변동없음	○축산농가 돕기 성금 모금(5억원) 운동전개
4.18	○양성 15건, 전일대비 변동없음	○발생지역 500m 이내 살처분 지시사항 보완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방안(시안) 발표 ○ 방역규제 조정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단계적 해제 -보호지역 방역규제조치 부분적 완화 -과주지역의 경계지역이동제한 3주시점 해제 ○과체중 돼지는 이동제한 해제일 기준 1주일간 수매토록 조치
4.19	○ 방역실적누계 -살처분 181농가 2,223두 -예방접종:10,702농가562,938두 -혈청검사:351농가 1,805두 ○ 이동제한구역내수매:소 1,016, 돼지 43,637두 ○ 돼지 수출물량수매:11,809두	○ 긴급경영안정자금 421억원 지원 -지원조건:연리 5% ○ 축협중앙회장의 구제역대책 건의에 대한 경고 ○ 화성지역 이동제한지역산 식육가공장으로 한냉(주) 서울지사를 추가지정

일자	발 생 상 황	조 치 사 항
4.20	○ 방역실적(누계) - 살처분 : 181농가 2,223두 - 예방접종:10,916농가 615,865두 - 혈청검사 : 367농가 1,860두 - 우제류 구매 : · 이동제한지역:소1,288, 돼지 49,219, 자돈 29,904두 · 돼지 수출물량 : 11,864두	○ 이동제한지역내 한우 구매지침 변경 - 「선급금 구매방식」 도입 (70% 선급) ○ 긴급경영자금 총 501억원 지원 ○ 이동제한지역 거세우 구매가격 차등적용 ○ 해제지역의 분노 및 원유처리방안 시달 - 이동제한지역산 원유처리방안도 검토 지시 ○ 긴급방역비 지원 내역 시달 - 지원액:2,661백만원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명령위반 농가등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시달 ○ 이동제한지역산 부산물처리 세부지침 시달 ○ 차관보 주재, 농경연 전문가와 구제역 파급영향과 정책방향 협의
4.21	○ 총 신고 65건(양성 15, 음성 49, 검사중 1건) ○ 구매실적(누계) - 이동제한지역:소 1,596두, 돼지 54,679두, 자돈 35,788두, 모돈 14두 - 돼지 수출물량 : 11,864두	○ 살처분 가축등에 신속한 보상금 지급 지시 - 지급예정액 일부 가지급 ○ 구제역방역용 소독약제 살포시 유의사항 통보 - 적정량 사용,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시 중화처리등으로 토양오염 방지 등 ○ 행자부에 용인지역 특별교부세 지원협조 요청 ○ 구제역 방역용 생식회 추가 공급계획 시달 - 추가공급량(4.22~4.27) 3,537톤

3월 19일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최창국씨 농장의 한우 8두에서 고열과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항생제, 해열제 등을 구입하여 자가 치료
- ※일본에서도 3월 12일 미야자키현 비육농가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3월 20~24일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 1리 김영규씨 권수목장에서 젓소 15두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 3월 20일 1두, 22일 10두, 24일 4두에서 의사구제역이 발생
 - 증상으로 잇몸, 혀, 젓꼭지 발굽 등에 물집과 딱지가 형성되고, 침흘림과 고열 증세가 나타남.

- 농장주가 3월 24일 파주시에 의사광견병으로 신고함.
- 3월 24일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전학수씨 한우·젖소 농장의 한우 20두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3월 25일

-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파주 의사구제역 임상 검사, 수의과학검역원에 발생 보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료에 대한 검사 실시
- ※일본 미야자키현 비육우 농장의 의사구제역 발생 확인 및 살처분 실시

3월 26일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이봉희씨 농장의 한우 5두에서 임상증상 발생하여 동물병원에 진료 의뢰, 세종동물병원에서 해열제, 항생제로 치료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파주 발생농장 젖소 15두에 대해 의사구제역으로 판정하고, 파주 발생농장 15두와 이웃농가 미감염 90두를 도살하여 매몰하고, 반경 20km이내의 가축이동을 제한함
- 농림부 젖소 「수포성 질병 비상대책본부」 설치

3월 27일

- 농림부는 의사구제역(수포성 질병)을 공식 발표함. 일본은 한국산 우제품 동물 및 생산물에 대한 수입을 장점 보류
- 젖소 수포성 질병에 대한 정부 발표 후에 돼지 지육가격 하락
 - (3.25) 2,639원 → (3.27) 2,582원/kg (2.2% 하락)

3월 28일

- 충남 보령군 주산면 신구리 이종복씨 농장의 한우 55두중 16두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 농림부 「수포성 질병 비상대책 회의」 개최, 농림부 김동근 차관주재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대표들과 1차 회의 개최
-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사구제역 발생 경위 및 조치 상황 통보

3월 29일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인환씨 한우 5두에서 의사구제역 발생
- 영국 퍼브라이트(Pirbright) 연구소에 파주지역의 의사구제역 검사시료 송부
- 농림부 「수출규격돈 수매」 발표

3월 29~30일

-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성윤제씨 젓소농장 30두중 7두 발생

3월 30일

- 충남 홍성 갈산면 오두리 이상재씨 농장에서 한우 의사구제역 1두 발생
- 미국 한국산 우제품 동물 및 생산물 수입 잠정 보류
- 경제정책조정 장관회의 및 차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협조사항 논의

3월 31일

- 홍성군 최창국, 이봉희농가 진료수의사(세종동물병원장)가 진료가축에서 구제역 증상을 보여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료에 대한 검사 실시
- 호주 한국산 우제품 동물 및 생산물 수입 잠정 보류
- 파주 의사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가 지원책 강구 발표

<관련부처 협조사항>

부 처 명	협 조 사 항
재 경 부	○ 관련부처 지원상황 총괄 조정
기획예산처	○ 국가비상방역 및 보상관련 예산확보지원(예비비전용등) - 살처분보상금, 부산물폐기 보상금, 도태장려금 등
행정자치부	○ 오염지역·경계지역내 주민들에게 방역조치 적극협조 요청 - 일선행정공무원의 방역조치 참여 - 홍보전단을 이용한 주민 홍보
국 방 부	○ 살처분 매몰에 군장비 및 인력지원과 매몰지 확보협조 - 오염·경계지역내 군사훈련·작전 자제 - 이동제한 관련 병력 및 소독·화생방제독기(制毒機)등 지원 - 헬기항공방제 협조
외교통상부	○ 예방약 조달 현지협조(주영국대사) 및 관련국가 통보 - 국내발생에 대한 관련국가의 동향파악 - 국내상황에 대한 정확한 홍보로 국제신뢰도 제고
보건복지부	○ 소비자에 대한 육류의 안전성 홍보 - 수포성질병은 사람에 감염되지 않고 먹어도 해가 없음
국정홍보처	○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기관을 통한 대국민 홍보
경 찰 청	○ 오염지역·경계지역내 가축·축산물·주민 등의 이동통제 협조 - 주요 도로 통제소 인력지원 및 검문강화
환 경 부	○ 살처분 가축 매몰에 따른 부지 선정 협조 - 환경피해가 없는 부지 물색 등
건설교통부	○ 예방약 신속 수송(영국 → 한국) 협조 ○ 이동통제를 위한 도로망 파악협조
관 세 청	○ 예방약 신속 통관 협조

4월 1일

- 충남 홍성군 최창국·이봉희씨 농가 의사구제역 판정, 질병발생 2개 농장 한우 58두, 인근 500m이내 5개 농장 미감염 한우 33두, 돼지 2두, 총 93두 도살·매몰
 - 4월2일 오후 반경 800m내 1농가 한우 5두 도살 매몰
- 충청남도에 가축이동제한 및 발생지역 가축 도살, 매몰처리 구두로 조치

4월 2일

- 충남 홍성 전학수 이상재씨, 경기 화성 비봉면 성윤제씨 의사구제역 발생신고
-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경기 파주 권수목장 의사구제역을 구제역으로 최종 확인
- 충청도에 대한 구두조치 상황 공문으로 지시, 통제 초소 설치
 - 그러나 시간여건상 이동제한 사실을 모든 대상농가에 전달하는데 실패하여 돼지 502두(8농가)가 서울 및 인천 도축장에 각각 출하
- 홍성 가축시장 잠정 폐쇄하고, 파주 경계지역내 큰 돼지 수매

4월 3일

- 충남 홍성 구항면 김인환씨, 충남 보령 주산면 이종복씨 의사구제역 발생신고
- 「사회안전 관계장관 회의」 개최, 의사구제역 특별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발생지역 예방접종 실시 및 지원대책 추진
- 의심가축 신고단계부터 초동방역 및 차단방역 지시
- 일본 미야자키현 비육우농장에서 의사구제역 추가발생, 일본 미야자키현 비육우 9두 도살 매몰

4월 4일

- 충남 홍성군 전학수, 이상재씨 농장의 가축 의사구제역 발생 판정
 - 발생농장 소 56두, 돼지 1두 도살
- 충남 홍성군 구양면 장양리 김인환씨 한우농장 11두중 5두 의사구제역 발생 판정
 - 발생농장 한우 11두, 인접농장 한우, 염소, 돼지 등 37두 도살, 매몰
 - 반경 20km이내 모든 가축 이동제한명령, 10km이내 예방 접종실시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이종복씨 한우농장 55두중 16두 의사구제역

발생 판정

- 발생농장 한우 55두 도살, 매몰, 반경 20km이내 모든 가축 이동제한명령 및 10km이내 예방 접종 실시, 초소 35개소 긴급설치
- 홍성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 지정도축장 지정
 - 반경 10km이내 4개 및 10-20km내 4개, 가공공장 6개
-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 수매지침 시달
- 메리알社 및 바이엘社와 구제역 예방약 300만두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
-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위원회 회의
- 농림부 시도농축협에 대하여 의사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설치 운영 지시
- 농림부 가축시장 폐쇄명령 발동 요청, 비상근무 명령
- 범정부 쇠고기·돼지고기 한근 더 먹기 운동전개,
-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 파주 구제역 검사 양성 판결 (구제역 O형)
- ※일본의 의사구제역이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인

4월 5일

- 의사 구제역 발생 3건 신고, 발생신고 12건 음성 판정
- 전국 가축시장 폐쇄조치
- 홍성 지역 이동제한 이전 출하돼지 전량 음성확인 및 정부수매조치
- 도축 부산물 폐기방법 및 보상기준 통보
- 화성 이동장관실 운영
- 홍성, 보성 차관주재 현장 대책회의

4월 6일

- 충남 홍성, 당진 돼지구제역 신고 음성 판정
- 경기 충남 수의사 총동원령
- 구제역 예방약 75만두분 국내 도착(1차), 구제역 예방약 500만두분 검역원에 추가구입 지시
- 농림부 구제역 대책상황실 확대 개편

4월 7일

- 수의과학검역원 의사구제역 7건 모두 구제역으로 판정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이봉희씨농장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최창국씨농장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이상재씨농장
 - 충남 홍성군 구항면 매현리 전학수씨농장
 - 경기 화성군 비봉면 쌍학리 성윤제씨농장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이종복씨농장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인환씨농장
- 이동제한지역의 원활한 지육반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청원군수실, 보령군 상황실에서 농림부 차관보, 청원군수, 농가대표참석
- 우리 축산물 더먹기 캠페인 전개
 - 정부 세종로청사, 과천청사 인근지역에서 홍보전단 배부
- 구제역발생지역 반경 10km이내 예방접종, 혈청검사 등 실시

4월 8일

- 총신고상황 46건, 양성 8건, 음성 24건, 검사중 14건
 - 양성판정 결과 7일결과와 변동 없음. 음성은 4건이 증가함.
 - 음성판정지역은 경기 화성군 매송면 원평리(한우), 팔탄면 해창리(젓소)
정남면 고지리(한우), 경기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2리(젓소)
- 수출용돼지 및 이동제한구역내 우제류 수매대행기관 추가지정
 - 기존 한냉 → 축협중앙회 추가
- 전국 농대 학장 간담회 개최
- 구제역 직접피해 농가에 대한 농업재해에 준하는 간접지원기준 시달

4월 9일

- 구제역 예방약 75만두분 국내 도착(2차)

- 총신고상황 49건, 양성 9건, 음성 34건, 검사중 6건
 - 양성 1건 추가: 충남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갑환(한우1두)
 - 음성 6건 추가: 경기화성 향남면 하길4리(젓소), 남양면 신남 1리(젓소), 충남당진 우강면 대포리(한우), 전북 김제시 백산면 하서리(한우), 전남 영광군 법성면 용덕리(젓소), 제주시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한우)
- 구제역발생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 지침시달

<수포성질병 관련, 이동제한 지역현황>

구 분	세 부 지 역	
발생지역 (반경3km이내)	홍성군 (4개면, 17개리)	구항면,은하면,갈산면,결성면,
오염지역 (반경3~10km) ※ 4시·군 14읍·면,106리	홍성군 (10읍면, 84리)	홍성읍,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보령시	천북면
	서산시 (2면,9리)	해미면, 고북면
	예산군	봉산면
경계지역 (반경10~20km) ※ 5시·군, 28읍면동.204리	홍성군 (5읍면,39리)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보령시 (6면,40리)	천북면, 오천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청라면
	서산시 (7면.동,35리)	인지면,부석면,음암면,운산면,해미면,고북면,석남동
	청양군	비봉면, 화성면
	예산군 (8읍.면,71리)	삼교읍,광시면,대흥면,응봉면,덕산면,봉산면,고덕면,오 가면

4월 10일

- 경기 용인 의사구제역 발생
- 양성 11건, 음성 34건, 검사중 8건
- 농림부차관 및 차관보 구제역 현장 대책협의회 주재

- 법인 양돈협회 대표자 간담회
- 이동제한 및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방안 시달
- 국세청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 및 세정지원 내역 통보
- 정부지원 구제역방역용 생식회 시도별 배정 통보
- 경찰청에 구제역 방역요원 추가 협조 요청

<경기 용인구제역 이동제한지역 현황>

구 분	세 부 지 역	
발생지역 (반경 3km 이내)	용인시	남사면
오염지역 (반경 3~10km)	용인시	이동면, 원삼면, 남사면, 포곡면
	오산시	원동, 부산동
	평택시	진위면, 송북동, 송탄동,
	화성군	동탄면
	안성시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경계지역 (반경 10~20km)	안성시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공도면, 원곡면, 삼죽면, 고삼면
	용인시	기흥읍, 원삼면, 포곡면, 백암면, 양지면, 남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평택시	팽성읍, 진위면, 송탄동,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중앙동, 서정동, 비전1,2동, 신평동, 원평동, 세교동

※경계지역(10~20km)은 보호지역(10km이내)과 달리 예방주사 미접종, 도축 처리후 경계지역내 지육유통 허용, 이동제한지역밖 도축장과 육가공장 지정 도축 허용, 사료차량의 세척·소독후 통행허용 등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음.

4월 11일

- 총신고상황 53건중 양성 12건, 음성 40건, 검사중 1건
- 양성 11건(4.10) → 12건(4.11), 1건 추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하구용(한우6두)로 양성 판정 1건 추가
- 음성 34(4.10) → 40건(4.11), 6건 추가

<이동제한지역내 수매정책>

- 이동제한지역과 일반지역 수출용 돼지의 차별적 수매
 - 일반지역(수출용돼지): 100kg 1마리당 143천원 수매(경영비 수준)
 - 이동제한지역: 100kg 1마리당 12.3%가 높은 160,600원으로 수매
- 출하적체 해소 협조 농가의 출하지연에 따른 보상
 - 출하 지연으로 체중이 늘어난 돼지(110kg이상)에 대해 1kg당 1,606원 외에 사료효율 등을 감안, 돼지 수매가격의 10% 가산 가격으로 수매
 - 3주동안 구제역 추가발생이 없어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에도 출하정체로 인해 체중이 일정수준(110kg)이상된 돼지의 경우 정체된 물량 전량에 대해 이동제한지역 수매가격으로 수매(계획)
- 자돈에 대해서도 두당 평균 60천원(매몰비용 포함)으로 수매
 - 시·군공무원이 확인하여 매몰후 수매기관이 직접 수매자금 지급
- 돼지 집단사육지인 충남 홍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자금 80억원을 저리로 융자지원
 - 타지역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자금 지원(적극 검토 계획)

<수급안정 및 방역대책>

-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하여 경계지역 밖의 지정도축장 출하를 허용
 - 가축방역관 및 시장·군수로부터의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역을 위한 특수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토록 함
 - 지정도축장
 - 보호지역(10km)이내 : 홍천산업(홍성), 논산축협(논산), 동방식품(부여)
 - 경계지역(20km)이내 : 우성산업(천안), 당축산업(당진), 광축산업(서산), 아산농산(아산), 중앙산업(예산)
- 방역을 위하여 내장·족 등 부산물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지육은 2° C이상 냉장상태에서 24시간 숙성후 지정된 가공장에서 가공(발골)하여 유통
 - 지정가공장: (주)한냉 중부공장(충북청원)·서울사업소, 한보축협(홍성), 중부물류센타(천안), 연기축협, 사조산업(천안), 축협화성사업소 등

4월 12일

- 총신고상황 54건중 양성 12건, 음성 41건, 검사중 1건
- 양성 12건(4.11) → 12건(4.12), 변동없음
- 음성 40(4.11) → 41건(4.12), 1건 증가
- 충주지역 이동제한지역 돼지, 우제물 수매지시
- 구제역 예방접종 리후렛 10만부 제작 배부
- 구제역 발생 가축 살처분 현시가 보상방안 시달
- 모든 수매시 부산물 가격 적용기준 통보

4월 13일

- 총신고상황 55건중 양성 13건, 음성 42건, 검사중 0건
- 양성 12건(4.12) → 13건(4.13), 1건증가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김재교(한우 1두)
- 음성 40(4.12) → 42건(4.13), 2건 증가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구왕리 이재부(한우 2두)
- 홍성지역 구제역 대책회의
 - 검역원장,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부군수, 도축업체 대표등 참석
- 선거일 이동제한 지역 내 초소근무 철저 지시
- 이동제한지역내 원활한 도축, 부산물 처리를 위한 협의조정

4월 14일

- 총신고상황 57건중 양성 14건, 음성 42건, 검사중 1건
- 양성 13건(4.13) → 14건(4.14), 1건증가
- 음성 42(4.13) → 42건(4.14), 변동없음
- 구제역 역학 조사 활동
- 구제역 긴급 방역 조치 추진 철저 지시

4월 15일

- 총신고상황 59건중 양성 14건, 음성 43건, 검사중 2건
- 양성 14건(4.14) → 14건(4.15), 변동없음
- 음성 42(4.14) → 43건(4.15), 1건증가
- 구제역 2단계 방역작전 돌입
-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청약기간 연장
 - 구제역 방역업무로 인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업무차질
- 역학조사위원회, 충북 충주지역 역학조사

4월 16일

- 총신고상황 61건중 양성 15건, 음성 43건, 검사중 3건
- 양성 14건(4.15) → 15건(4.16), 1건증가
 - 충남 홍성군 구항면 공리 박광민(한우 1두)
- 음성 43(4.15) → 43건(4.16), 1건 증가
- 돼지고기 단체급식 확대 협조 요청
 -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등 수출중단으로 업계 경영난 심화 해소

4월 17일

- 총신고상황 62건중 양성 15건, 음성 45건, 검사중 2건
- 양성 15건(4.16) → 15건(4.17), 변동없음
- 음성 43(4.16) → 45건(4.17), 2건 추가
 - 충주시 주덕읍 심우복(한우 3두)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울리 이정용(젓소 4두)

4월 18일

- 발생지역 500m 이내 우제류 전체 살처분 지시사항 보완

- 예방접종 가축의 특별관리방안(시안) 발표
- 방역규제 조정
 - 구제역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의 단계적 해제
 - 보호지역의 방역규제조치는 부분적으로 완화
 - 파주지역의 경계지역 이동제한 3주시점 해제 발표
- 과체중(110kg 이상) 돼지에 대한 수매는 이동제한 해제일 기준 1주일간 수매토록 조치

4월 19일

- 시·도 구제역 방역체계 합동점검(국무조정실, 농림부, 행자부) 2일째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421억원 지원
 - 지원 조건 : 연리 5%, 1년내 자율적 분할 상환 원칙
- 축협중앙회장의 구제역 대책건의에 대한 경고 조치
- 화성지역 이동제한지역산 식육가공장으로 한냉(주) 서울지사를 추가지정
- 그간의 방역실적
 - 가축 살처분 실적(누계) : 181농가 2,223두
 - 예방접종 실적(누계) : 10,702농가 562,938두
 - 혈청검사 실적(누계) : 351농가 1,805(전 두수 음성)
- 이동제한구역내 수매 실적(누계) : 소 1,016, 돼지 43,637두
- 돼지 수출물량 수매 (누계) : 11,809두

4월 20일

- 이동제한지역내 한우 수매지침 변경 시달
 - 농가경영난 완화를 위해 「선급금 수매방식」 도입 (70% 선급)
-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총 501억원 지원
- 이동제한지역 거세우 수매가격 차등적용 지침 시달
 - 고급육 생산장려를 위해 수매가격 차등적용 (3,005천원/500kg 기준)
- 이동제한 해제지역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방법” 및 원유처리방안 시달

- 이동제한지역산 원유처리 방안도 검토 지시
- 구제역 발생지역 긴급방역비 지원 내역 시달
 - 지원액 : 2,661백만원 (소독약품 2,219, 휴대용소독기 18, 예방접종자재 424)
-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명령위반 농가등 신고포상금 지급계획 시달
- 이동제한지역산 부산물처리 세부지침 시달
- 차관보 주재, 농경연 전문가와 구제역 파급영향과 정책방향 협의
- 조치실적 누계
 - 가축 살처분 : 181농가 2,223두
 - 예방접종 : 10,916농가 615,865두
 - 혈청검사 : 367농가 1,860두
 - 우제류 수매 :
 - 이동제한구역내 : 소 1,288두, 돼지 49,219두, 자돈 298농가 29,904두
 - 돼지 수출물량 : 11,864두

4월 21일

- 총 신고, 65건(양성 15, 음성 49, 검사중 1건)
- 구제역 살처분 가축등에 신속한 보상금 지급 지시
 -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예정액 일부 가지급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제역 방역용 소독약제 살포시 유의사항 통보
 - 적정량 사용 및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시 중화처리등으로 토양오염 방지 등
- 행정자치부에 용인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협조 요청
- 구제역 방역용 생석회 추가 공급계획 시달
 - 추가공급량 2000년 4.22~4.27) 3,537톤
- 수매실적(누계)
 - 이동제한구역내 소 1,596두, 돼지 54,679두, 자돈 35,788두, 모돈 14두
 - 돼지 수출물량 : 11,864두

부록 2 : 대만의 구제역 경험과 시사점

1. 구제역 발생 이전의 가축사육 현황

1) 돼지 사육두수(1996년말 기준 상시사육두수) : 10,698,366두

2) 구제역 발생이전 돈육 수출

- 전체 돈육생산량의 60% 정도를 수출하고 있었으며,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 중 41%를 점유(96년 수출량 26만6천톤 : 600만두분, 한화 약 1조 6천억원)

3) 구제역 발생 및 피해 현황

구분	97/3.19	97/4.20	97/5.19	97/6.17	97/7.17	98/11
발생지역(시·현)수	2	17	20	20	20	-
발생농장(개소)	3	4,163	6,114	6,144	6,147	-
발생두수(두)	1,570	633,762	1,008,793	1,011,421	1,011,674	-
폐사두수(두)	615	135,939	183,845	184,231	186,347	-
살처분두수(두)	0	2,203,971	3,833,795	3,850,536	3,850,746	4,030,000

- 수도권(타이베이시, 지룽시) 및 도서지역(핑후현)을 제외한 20개 현시에
서 발생
 - 살처분 정책과 예방접종을 병행, 발생 4개월이 지난 1997년 7월 이후
추가적인 발생이 없었으나,
 - 백신접종이 소홀해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돼지의 저항력이 떨어져
1997년 12월 6일에 4개 현·시의 4개 농장에서 총 232두의 발병이 나
타났으며,
 - 그 후 계속적으로 9개 현·시의 12개 농장에서 700두가 발생하여 추가
적인 피해두수는 4,486두에 이름.

- 대일수출 중단에 의한 경제적 피해
 - 대만경제건설위원회 추계에 의하면 1997년도 손실액은 6조 5,600억원 (생산농가·업자 피해 5조 800억원, 가공수출업자 피해 1조 4,800억원)으로 발표
 - 국내 언론에서는 최근까지의 총피해액을 약 4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2. 구제역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 96년 10월
 - 미확인된 양돈농가로부터 구제역 발생설
- 97년 1~3월
 - 신죽현 죽동시의 개인 도축장에서 A 도살자가 40일전에 발이 떨어져 나간 돼지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말을 양돈농민이 들은 적이 있다고 함.
 - 3월 초순 : 신죽현 죽동시의 개인 도축장 인근의 양돈장에서 흑돈이 대량 사망했다는 소식을 양돈농민이 전함
 - 병동현, 고웅시 지역의 양돈농가가 신죽현에서 돼지를 팔고 돌아온 후 구제역에 감염되었다고 전함.
- 1997년 3월 10일경 신죽현 죽동지역 번식농장에서 수포성 병변 발생
- 3월 11일 대북현, 장화현, 도원현 등 인접지역에서 돼지 입에서 흰 거품을 토하고 발이 떨어져 나가면서 돼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발생
- 3월 18일 병동기술학교 수의학과 교수 3명은 구제역으로 확진, 대만농업위원회는 대만성 가축위생소에 구제역 바이러스 여부 확인 요청
- 3월 19일 대만성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진단결과 혈청형 O1 및 ASIA-1으로 확진하고, 추가적인 시료를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제공
 - 대만 농업위원회는 돈가가 4,500NT에서 3,500NT로 하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돈육수출을 금하고, 오전11시 농업위원회가 구제역 발생을 정식으로 선포.
 - 이때 이미 10개 현에서 구제역 감염이 발생, 오후에는 돈가는 2,000NT로 하락

-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 구성
- 저장중인 4만여개의 백신을 주사하고, 관계인사를 영국의 세계구제역실험실에 파견하여 바이러스 재검정을 의뢰
- 식품관련 주가 폭락
- 대만 행정원장이 대책위원회 구성을 선포
- 대만성 성장이 각 현과 시에 긴급방역센터를 구성토록 하고 농림성에 구제역 박멸위원회 구성 요구
- 백신 수입 긴급 발주
- 대만 TV 방송국 병사한 돼지를 대량 보도하고, 무수한 신문기자와 공무원이 구제역 발생장소에 무질서하게 난입함.
- 3월 20일 오전 11시 :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구제역 공식 발표, 외래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지휘부 설치
- 3월 21일 : 각 시군정촌에서 공식적 발생 통지
 - 발생상황 파악, 소독 실시, 환경위생 개선 등 병행, 이동금지 공고
 - 발생상황 파악은 양돈농가 및 시정촌 또는 민간수의사로부터 가축위생시험소에 보고, 이를 근거로 집계함.
- 4월 2일 :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O1형으로 최종 확인

3.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원인

1) 발생 원인

- 중국 본토에서 해안으로 밀수된 돼지고기 및 식육부산물 또는 동남아의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의 여행객으로 추정

2) 확산 원인

- 양돈농가 및 위생관련자들은 발생초기에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결여로 인해 수포성 구내염으로 오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
- 생돈 경매시장을 통하여 감염되고, 양돈농가도 감염된 사실을 은폐하여 유통

- 감염 또는 폐사된 돼지를 일정한 장소에서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으로부터 수집, 운송하는 과정에서 더욱 확산

4. 발생 양상

- 1997년 7월 발생 초기에는 돼지만이 구제역으로 확인되었으나, 2년 후인 1999년 6월 18일 대남지역의 소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됨.

5. 방 역

- 동물전염병 방치조례 및 외래 악성가축전염병 긴급박멸 실시요령에 의한 대책 실시

1) 살처분정책의 실시

- 발생농장의 사육돼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두수 살처분
- 위생당국, 경찰, 환경보건국에 연락하고 군대에 사체운반 등 협조 요청
- 살처분 보상금 지급(행정원 구제법에 의해 결정)
 - 자돈 두당 한화 약 11,900원, 비육돈 약 81,600원(체중 100kg 기준), 종돈 약 163,200원
 -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가 전액부담하고, 기타 긴급처리경비는 지방정부 부담

2) 매몰 및 소각

- 매몰 : 원칙적으로 발생농가의 부지내에 매몰, 수원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정부의 공유지에 매몰
 - 매몰작업 및 매몰장소까지의 운반은 군부대 병력지원
 - 환경문제 발생,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힘.
- 소각 : 처리두수가 적은 경우에는 소각장을 이용 소각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두 규모를 소각할 수 있는 구덩이를

파서 소각 후 매몰(소각→소독→매몰), 군부대 병력 지원

3) 가축 등 이동제한 구역 설정

- 발생지역 주변에 모든 차량과 사람, 동물에 대해 통행차단을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동 제한만을 실시
 - 이동제한 구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설정하였으나, 구제역 비발생 농가의 돼지는 수의사의 건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동(출하) 가능하게 함.
- 이동제한지역 내에서는 차량, 사람 등 이동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소독 실시
- 오염지로부터 3km반경에 위치한 지역을 오염방어지역으로 선포
- 오염지로부터 6km 반경 지역을 감독지역으로 설정, 동물이동시 통제

4) 백신접종

- 구제역 발생확인 시점에서 구제역이 다발하고 있고, 확인 후 2일째로부터 살처분을 실시했음에도 예방효과가 없이 급속히 전파되고, 양돈농가의 밀도가 높아 백신에 의한 방역 결정
 - 초기에는 구역백신을 하였으나, 후에 대만 전역에 예방접종
 - 총 2,100만두분 접종(아르헨티나 1,300만두, 영국 등 800만두분 백신 수입에 의한 접종)
- 비용부담 : 전액 행정원 농업위원회 부담

5) 소독 실시

- 차량, 자재, 의류 등은 4% 탄산소다, 차량, 축사 등 2% 가성소다, 매몰 등은 생석회를 이용
- 돼지 입식을 위한 소독
 - 축사, 기자재, 지붕, 도로 등 전 농장을 7일 간격 3회 소독을 완료하고, 수의사의 확인이 있어야 입식 가능
 - 축산폐수는 3단계 정화처리

6. 비용 부담

1) 국가부담

- 3월 24일 특별법 성립, 정부 특별예산에서 지출 결정
- 살처분 보상(최대지출항목)
 - 감염된 돼지에 대한 처리
 - 동물전염병 방지조항 제 20조 및 40조에 의거, 감염된 양돈장의 모든 돼지는 도태, 원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자돈: $600\text{NT} \times 0.6 = 350\text{NT}$ (한화 11,900원)
 - 육성돈: $4,000\text{NT} / 100\text{kg} \times 0.6 = 2,400\text{NT}$ (한화 81,600원)
 - 종돈: $8,000\text{NT} \times 0.6 = 4,800\text{NT}$ (한화 163,200원)
- 백신구입비용(지출액으로는 많지 않음)
- 위생대책 이외의 구제대책
 - 행정원 구제법에 의하여 3년간에 한하여 3.0% 융자 결정(통상 이자율은 7.9%)
 - 양돈농가에 대한 긴급 대출조건
 - 4,000NT(한화 136,000원) / 두
 - 대출 최고한도액: 800만NT(한화 272만원)
 - 연이자: 3%, 3년후 상환
- 비감염 돼지의 도살후 냉동 보관을 위한 보조
 - 2,000NT(한화 68,000원) / 두
 - 냉동보관료: 400NT(한화 13,600원) / 두
 - 연이자: 3%, 1년후 상환
- 기타 : 사망돈, 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음.

2) 대만성 부담

- 방역작업에 관한 비용은 살처분 보상금에 비해 크게 적은 비용으로 대만성에서 전액 부담

7. 구제역 이후의 정책

- 수출 중단에 따라 양돈산업을 수출위주에서 내수위주의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적정규모 유지계획을 수립함.
 - 적정규모: 1997년 10월 기준 모돈수를 119만두에서 70만두로, 육성돈은 800만두에서 700만두로 감축 계획 수립(1997년 보유두수 800만두)
 - 1998년 대만정부의 정책은 사육규모 700만두 유지(연간 1000만두 생산)
 - 1998년 당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도태 계획 수립
- 축산폐수 오염기준 강화
 - 1997현재: BOD 100ppm, COD 400ppm
 - 1998년 이후: BOD 80ppm, COD 250ppm
- 양돈산업 인허가 제도 보완(긴급사항 조치내용 포함)
- 3단계의 박멸정책 수립

1단계 : 1997년 7월~2000년 6월

- 1997년 7월~1998년 6월 : 백신접종, 25kg 미만 돼지의 이동 제한, 구제역이 발생한 전체 양돈장 철거
- 1998년 7월~1999년 6월 : 백신접종-감염돼지 살처분, 발생률 0 유지
-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 : 백신접종, -발생률 0 유지

2단계 : 2000년 7월~2001년 6월

- 백신접종 중단, 발생률 0 유지(발생할 경우 1단계로 복귀)

3단계 : 2001년 7월~2002년 6월

- 돼지구제역 박멸 선포

- 대형양돈업자는 미국, 캐나다에 양돈장을 설립하고 일본수출을 계획
 - 일본 육류시장은 대만인의 양돈기술 신뢰
 - 일본인의 입맛과 기호에 적합한 돼지고기생산기술과 일본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규격의 제품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술 보유
- 사육두수 5,000두 이상의 농가는 반드시 수의사 고용
- 전염병 발생시 발생농가 자체에서 감염돼지 도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갖추도록 유도

- 구제역 발생시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감염돼지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전염되는 사례 방지
- 남은 음식물 등 열처리후 가축에 급여토록 함.
- 1998년 7월 4일(발생후 16개월 경과) 일본은 대만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 햄 등 살균가공된 돈육제품의 수입 재개
※1983년 덴마크의 구제역 발생시도 18개월간 생돈과 돈육 수출 전면 중단된 바 있음.
- 대만은 WTO가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1998년 6월 이후 대만 육류시장을 미국에 개방함. 1998년에는 연간 5,000톤을 수입하며 향후 6년에 걸쳐 연간 15,400톤까지 증가하게 됨.
- 돼지고기 가공품과 닭고기도 연간 7,500톤, 1만톤 수입 예정(수입관세 15%에서 6년에 걸쳐 12.5%로 감축)

8. 구제역 발생 이후 돈육소비 및 가격동향

- 구제역 발생 공식선언 후 돈육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돼지가격 폭락
 - 구제역 발생 전 돼지가격 4,500NT\$(100kg 생돈)→ 2,000NT\$로 폭락
- 정부의 가격지지정책 등으로 돼지가격은 6월에 4,000NT\$까지 상승하였으나 1997년 7월 조사결과 돼지사육두수(모돈 105만두, 육성돈 800만두)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지자 돼지가격은 다시 2,000NT\$대로 폭락
- 돈육소비는 점차 회복하여 1997년 10월에는 구제역 발생전의 90%수준

9. 구제역 발생에 따른 대만 양돈산업의 득실

1) 구제역 발생으로 잃은 것

- 양돈산업 붕괴 : 돼지사육두수의 약 35% 살처분
 - 대일돈육수출 중지에 의한 피해액은 1997년 기준 약 6조 5천억원 추산
 - 양돈사료 1996년 420만톤에서 1997년 300만톤으로 감소
- 동물 및 축산물 교역에 불리

-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 수출 금지
- 구제역 감염돼지 살처분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
 - 수자원 및 토양 오염 등
- 구제역 초동방역 실패 등 정부의 신뢰도 하락
-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 기피 및 정부정책의 신뢰도 저하

<구제역에 따른 양돈관련산업의 손실 현황(1997.7.3 현재)>

업종별	손실액	비 고
유지업계	24억NT	대두박 총생산량 150억NT중 사료용 부분
동물약품업체	30억NT	-
사료업계	88억NT	년간 사료 총생산액 550억NT
		양돈사료 242억NT중일본수출 돼지용 사료
일본수출가공공장	420억NT	28개공장 폐쇄로 인한 600만두수출금지
냉동조리식품업체	3억NT	일본시장
	20억NT	국내시장
감염돈 도태	200억NT	385만두 도태
매년양돈감소두수	230억NT	500만두감량
양돈관계종사자		총 70만명 중 20만명 실업자 발생
총손실액	1015억NT	미화 39억달러(3조5천억원)

출처 : 대만 구제역 조사단 보고서(1997.7)

2) 구제역 발생으로 얻은 것

- 가축전염병 방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양축농가의 차단 등 방역에 대한 의식 고조
-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강화
- 구제역 방역 및 방역에 대한 경험 획득

10. 종합 평가와 시사점

1) 초동방역 만전

- 대만은 초동방역에 실패하여 피해 지역 및 두수가 증가함.
 - 구제역 예방약을 평소에는 10만두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6년에는 4만두

분으로 줄인 것이 피해가 늘어나게 된 요인으로 분석됨.

- 폐사축 방치, 감염축 유통 등 전염병 차단조치 미흡, 구제역 진단을 위한 전문가 부족 등 초기 방역조치에 미흡하였음.
- 살처분, 소각, 매몰 등 관련 시설도 미비하였음.
 - 매몰장소 확보 어려움, 소각시설 부적합 등
- 구제역 방역에 대한 사전 준비 미흡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대응 연구 미흡, 방역대책 미수립
 - 양축농가에 대한 홍보 미흡
- 양돈장 구제역 발생시 신고하지 않고 시장 거래로 확산

⇒ 구제역 및 의사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초동방역 만전 및 확산 방지

2)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및 유지

- 대만은 초동방역에는 실패하였으나, 각 부처간 협조체제의 구축 및 유지로 전반적인 방역에는 성공함.
 - 국가보상비 특별예산 지원, 사체처리 군 병력 지원 등
- 발생 3개월만에 완전통제 단계 진입
 - 살처분 정책과 예방접종을 병행하여 6.17일 이후 추가 발생 없음.
 - 향후 4~5년 경과후 양돈산업 회복 기대
- 축산 농가 및 전 국민의 가축방역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 대만 양돈산업의 구조적 재조정
 - 과밀화 지양, 환경보전 농업으로 전환, 수출정책 재평가

⇒ 농림부를 주축으로 하여 재경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범국가적 신속 대응방안 강구

부록 3 : 일본의 구제역 발생 상황

- 최초 발생
 - 3월 8일 발생
 - 3월 25일 의사 구제역 발표
 - 3월 26일 살처분, 4월 4일 공식 구제역 발표
 - 일본 미야자키현 지역 한 비육우 사육농가 10두 중 8두에서 발생
- 2차 추가발생 (미상 : 혈청검사결과)
 - 3월 29일~31간 혈청검사 실시
 - 4월 1일 혈청검사결과 양성
 - 4월 4일 살처분
 - 이동제한지역 20km 이내 농가 육용우 9두 중 6두에서 추가 발생
- 3차 추가발생
 - 3월 29일 농림수산성 산하 가축위생시험소가 마야자키현 다카오카 마을의 한 농가에 사육중인 육용우 번식농가 16두에서 2마리의 육용우를 채혈하여 혈청을 검사한 결과 항체가 의심됨
 - 4월 6일 다시 해당농가를 방문하여 10마리를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전 육용우에서 항체가 검출되었다고 4월 10일 농림수산성이 공식 발표
 - 발생경로: 공기에 의한 것보다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한 전파가능성이 높다고 추정
 - 조치내용으로 4.10일 오전 8:30분에 반경 50m 이내에 통행차단과 함께 4월 10일 사육 육용우 16두 전부 살처분, 축사소독, 오염물품을 소각
 - 4월 10일부터 3주간으로 이동제한 기간을 연장함 (당초 3.25일부터 3주간임)

부록 4 : 구제역 관련용어

구제역(FMD) :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우제류 동물의 악성전염병으로서 입, 혀,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수포)이 생기고, 체온의 상승과 식욕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정 List A 전염병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속한다.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한 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렵다.

우제류동물 : 동물중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는 소, 돼지,绵양, 산양, 사슴, 낙타 등을 일컬으며 여기에 속한 동물은 모두 구제역에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 동물질병 방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1924년 28개국이 참여로 창설된 이래 현재('99. 11월)는 154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 :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구제역 진단을 공인한 실험실로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Pirbright Lab.)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제역 국제표준실험실(World Reference Laboratory)이다.

리스트 에이(List A) 질병 :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구제역 등 15개 전염병으로서 이들 질병들은 국경에 관계없이 매우 격렬하고 급속하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List A 질병중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은 돼지콜레라와 뉴캐슬병뿐이다.

경계지역 : 오염지역으로부터 구제역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취해야 할 지역으로서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 요인 또는 구제역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경계지역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오염지역) : 구제역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으로서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당해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인 요인 또는 구제역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오염지역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발생위험지역 :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3km에서 10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이 지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구제역 감수성 동물은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 다만, 당해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 요인 또는 구제역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발생경계지역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발생지역 : 발생장소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의 지역으로서 이 지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구제역 감수성 동물은 살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당해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나 계절적 요인 또는 구제역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발생지역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발생장소(발생지) : 구제역 의사환축 또는 구제역 감염으로 확인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농가 및 그 주변을 뜻한다.

유입 경계상황 : 구제역이 지리적으로 중국의 북동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 대만, 일본, 북한 등 인접국가(지역)에서 발생시를 뜻하며 우리 나라는 현재 여기에 해당된다.

의사환축 발생상황 :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즉 의사환축

이 국내에서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 의사환축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역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발생 확진상황 :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의 확진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국가방역역량을 총집결하여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반드시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

발생 확산상황 : 발생초기단계에서 박멸에 실패한 경우 인근지역 및 전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국가 및 전국민이 합심하여 구제역 조기근절에 힘써야 한다.

면역지대 :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예방접종 실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내의 구제역 감수성 동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방약을 긴급 접종하여 구제역의 감염을 막아 구제역이 타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로선 발생경계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의사환축 : 구제역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될만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구제역 바이러스에 접촉되었거나 접촉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뜻한다.

이환동물 : 구제역에 감염된 동물로서 구제역의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기타 실험실적 검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된 동물을 일컫는다.

잠복기 : 특정병원체가 동물에 침입한 후 그 질병의 최초 임상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말한다.

살처분 : 수의기관의 감독 하에 특정질병의 발생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의 하나로써 이는 감염동물 및 동일군내 감염의심 동물과, 필요시, 직접 접촉이나 병원체를 전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간접 접촉으로

감염에 폭로된 타동물군의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을 포함한다. 감염농장에 있는 모든 감수성 동물은 예방접종 여부를 불문하고 살처분되어야 하며 사체는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 이들 동물로부터 유래된 생산물 역시 이를 통한 질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소독 : 완벽한 세척을 실시한 후 인수공통전염병을 포함한 동물질병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작업을 뜻하며, 소독은 동물, 배설물 또는 동물유래 생산물 등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동물, 시설, 수송차량 및 기타 대상물에 대해 실시한다.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vrqs.go.kr>

정책연구보고 P37
구제역의 파급 영향과 정책 과제

등록 제5-10호(1979. 5. 25)

인쇄 2000. 4. 22

발행 2000. 4. 22

발행인 / 강정일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인쇄 / 경희정보인쇄(주) (대표) 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